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03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이용선·안태준·박해철
장종태·김남근·윤건영
허영·박희승·김준환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에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 지연은 중소기업의 경영 난항을 심화시키고, 하청 및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체불의 연쇄 반응을 초래함.

또한, 최근 결제 전산화 및 금융 시스템 발전으로 기업 간 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었음에도 과거 기준인 60일 기한을 유지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탁기업의 자금 유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 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 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u>60일</u> 이 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 ----- ----- ----- <u>30일</u> ----- ----- ----.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 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 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 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 부터 <u>60일</u> 이 되는 날을 그 대 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② ----- ----- ----- ----- ----- ----- ----- ----- <u>30일</u> ----- -----.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 품등의 수령일부터 <u>60일</u> 이 지 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 ----- <u>30일</u> ----- ----- -----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수사항) ① . ② (생략)	제25조(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u>60일</u> 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 ----- ----- <u>30일</u>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